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14.1.17>

기 관 명

수신자

제목 **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**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6항 및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(비지급대상)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<table>
<tr><td colspan="3">전직지원금</td><td colspan="2">[ ] 지급대상
[ ] 비지급대상</td><td colspan="2">결정통지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신청인</td><td>등록번호</td><td></td><td>성명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
(성별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전화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휴대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결정내용</td><td colspan="5">[ ] 지급대상 [ ] 비지급대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급신청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지급대상기간</td><td colspan="2">~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비지급대상 사유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[이의신청 안내]
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/table>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 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
우 주소 /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 ) 팩스 ( ) /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